
2017년 부천대학교 자체평가 결과 요약보고서

2017. 1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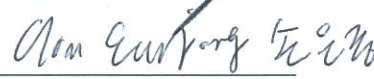
부 천 대 학 교

부천대학교 자체평가 결과 심사서

본 보고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와 본교 자체평가 규정 및 학칙 제94조(자체평가)에 의거,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하여 평가한 보고서로 본 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확인자 : 부천대학교 자체평가위원회

직 책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순용	
위 원	손은중	
위 원	최준혁	
위 원	한남주	
위 원	황지원	
위 원	문덕인	
위 원	김현주	

목차

2017년 부천대학교 대학자체평가 결과 요약보고서

I. 자체평가의 개요	1
1. 자체평가의 목적	1
2. 자체평가의 추진체계	1
3. 자체평가의 내용	3
II. 자체평가 결과	5
1. 자체평가 종합 결과	5
2. 정량지표 평가 결과[필수지표 포함]	5
3. 전체항목 평가 결과	6
4. 평가 결과 우수사례	7
5. 평가 결과 개선의견	7
III. 평가결과 활용 계획	8
IV. 자체평가 개선 실적	9

I

자체평가의 개요

1. 자체평가의 목적

- ☐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 종합 점검
- ☐ 자체평가 추진 및 관리를 통한 기관평가인증 갱신 심사('19년) 대비
- ☐ 대학의 발전 촉진, 질적 성장 및 교육 경쟁력 제고
-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알권리 보장

2. 자체평가의 추진체계

가. 자체평가 관련 근거

- ☐ 「고등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0호, 2017.3.21., 일부개정]

제11조의2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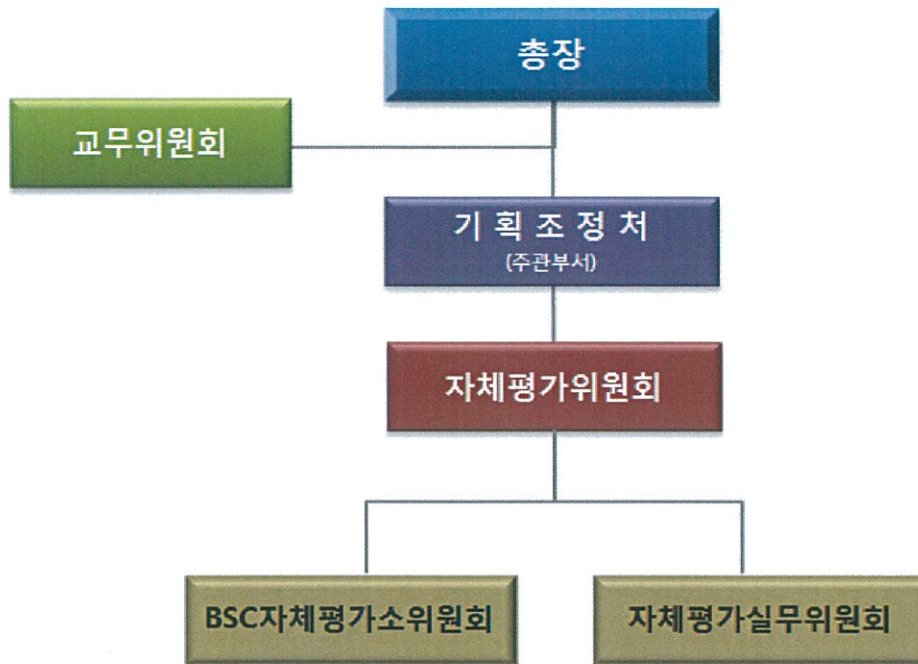
-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부천대학교 학칙

제94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본 대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나. 자체평가의 추진 조직



[그림 1] 자체평가 추진 조직도

다. 전담조직의 역할

구 분	구 성	역 할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총 8명 위원장 1명 위원 6명(외부위원 2명 포함) 간사 1명	☐ 자체평가의 중요사항 심의 ☐ 평가항목의 평가실시 ☐ 자체평가 결과보고
대학자체평가실무위원회	총 5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	☐ 자체평가 항목 실적 제공 ☐ 자체평가 업무 보좌
BSC자체평가소위원회	총 7명 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	☐ 대학발전계획 및 고유업무의 학과/부서 BSC 성과 점검
주관부서(기획조정처)	부서장 1명, 담당자 1명	☐ 자체평가 업무 총괄관리
학과/부서	26개 학과 10개 행정부서	☐ 자체평가 자료 작성 ☐ 자체평가 행정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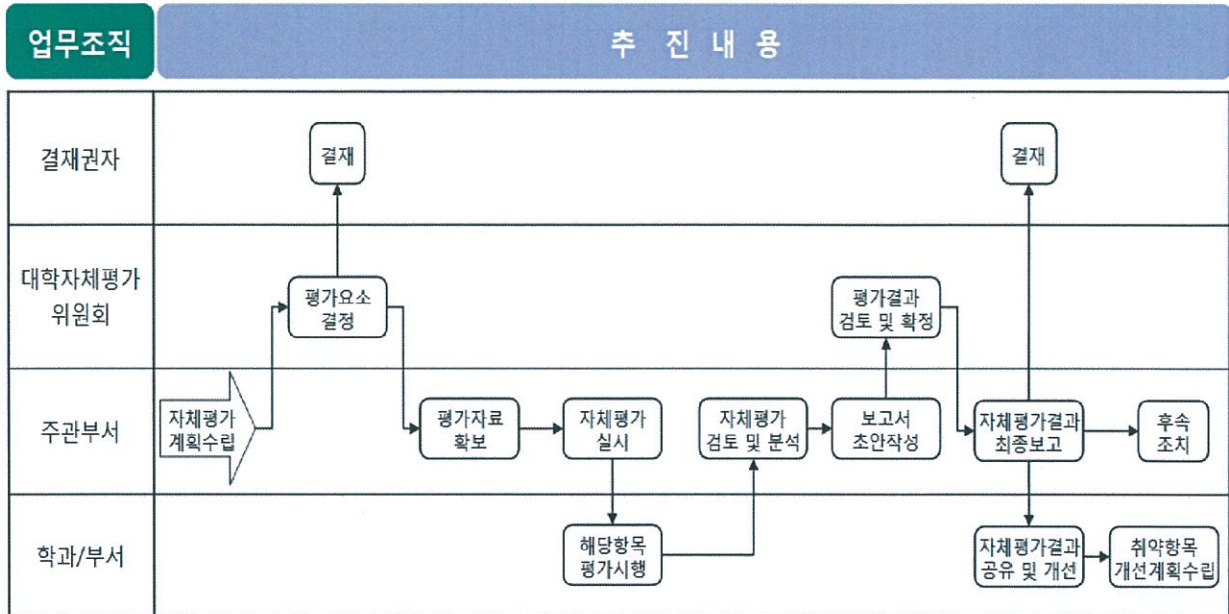
3. 자체평가의 내용

☐ 전문대학 2주기 기관평가인증 기준개선(안) 항목으로 선정하여 평가지표를 확정

<표-1> 평가영역과 세부기준

기준	세부기준	평가방법	전담부서
1. 대학의 사명과 책무	1.1 대학의 사명 및 발전계획	정성	기획조정처
	1.2 대학운영	정성	기획조정처
	1.3 대학의 책무 및 교육성과	정성	기획조정처 학생처/교무처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의 질 보장	정성	교무처
	2.2 전공 및 교양 교육	정성	교무처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지원	3.1 학사관리	정성 정량	교무처 학생처/입학홍보처
	3.2 교수학습 지원	정성	교수학습지원센터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4.1 산학협력	정성 정량	산학협력취업지원처
	4.2 현장실습	정성	현장실습지원센터
	4.3 평생교육	정성	평생교육원
5. 학생	5.1 학생지원	정성	학생처
	5.2 학생복지	정성	학생처
6. 교·직원	6.1 교원	정성 정량	교무처
	6.2 직원	정성	사무처
	6.3 교·직원 처우 및 복지	정성	교무처/사무처
7. 재정 및 시설	7.1 재정계획 및 운영	정성	기획조정처
	7.2 재정·회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정성 정량	기획조정처 사무처
	7.3 교육시설	정성	사무처/학술정보원
7개 기준	18개 세부기준	45개 평가요소	117개 판단사항

가. 자체평가 절차



[그림 2] 자체평가 추진 절차

나. 자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 ☐ 정성평가와 정량적 정성평가
- ☐ 필수평가요소는 정량적 정성평가 적용
- ☐ 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는 해당 기준을 구성하는 세부기준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충족(Y) / 보완(C) / 미충족(N)으로 평가
- ☐ 평가요소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학정보공시 자료(대학알리미)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
- ☐ 필수 평가요소 판정 : 지정된 정량적인 요구수준을 달성 또는 초과한 경우에는 충족(Y),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미충족(N)으로 평가

<표-2> 필수 정량평가 충족기준

필수 평가요소명	요구수준	담당부서
재학생 충원	82% 이상	원스톱서비스센터
전임교원의 확보	50% 이상	교무처
교육비 환원	100% 이상	사무처
장학금	10% 이상	원스톱서비스센터

II 자체평가 결과

1. 자체평가 종합 결과

충족	보완	미충족	계
7	0	0	7

2. 정량지표 평가 결과(필수지표 포함)

평가 요소	지표명	필수 여부	충족요건	평가 결과	충족 여부
2.2.1	전공 강좌당 학생 수		33명 이하	29.1명	Y
2.2.3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157천원 이상	183천원	Y
3.1.1	신입생 충원율		91% 이상	100%	Y
3.1.3	주당 수업시수		기준시간 9시간 이거나 평균시수12.8시간 이하	기준 9시간	Y
3.1.4	재학생 충원율	필수	82% 이상	96.9%	Y
3.1.5	성적분포 비율		전체 A학점 분포비율40% 이하	21.7%	Y
4.1.2	취업률		60% 이상(건강보험 및 국세DB)	60.8%	Y
5.1.3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1.6천원 이상	34.5천원	Y
5.2.1	등록금대비 장학금 비율	필수	10% 이상	17.5%	Y
6.1.2	전임교원 확보율	필수	50% 이상	56.7%	Y
6.1.4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0.2건 이상	0.26건	Y
7.2.1	교육비 환원율	필수	100% 이상	134.6%	Y
7.3.1	교사확보율		100% 이상	141.5%	Y

3. 전체항목 평가 결과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기준	판정	세부기준	판정	평가요소	판정
1. 대학의 사명과 책무	Y	1.1	Y	1.1.1	Y
				1.1.2	Y
		1.2	Y	1.2.1	Y
				1.2.2	Y
		1.3	Y	1.3.1	Y
				1.3.2	Y
				1.3.3	Y
2. 교육과정	Y	2.1	Y	2.1.1	Y
				2.1.2	Y
		2.2	Y	2.2.1	Y
				2.2.2	Y
				2.2.3	Y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지원	Y	3.1	Y	3.1.1	Y
				3.1.2	Y
				3.1.3	Y
				3.1.4	Y
				3.1.5	Y
		3.2	Y	3.2.1	Y
				3.2.2	Y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Y	4.1	Y	4.1.1	Y
				4.1.2	Y
				4.1.3	Y
		4.2	Y	4.2.1	Y
		4.3	Y	4.3.1	Y
5. 학생	Y	5.1	Y	5.1.1	Y
				5.1.2	Y
				5.1.3	Y
		5.2	Y	5.2.1	Y
				5.2.2	Y
6. 교직원	Y	6.1	Y	6.1.1	Y
				6.1.2	Y
				6.1.3	Y
				6.1.4	Y
				6.1.5	Y
		6.2	Y	6.2.1	Y
				6.2.2	Y
				6.3.1	Y
7. 재정 및 시설	Y	7.1	Y	7.1.1	Y
				7.1.2	Y
		7.2	Y	7.2.1	Y
				7.2.2	Y
				7.2.3	Y
		7.3	Y	7.3.1	Y
				7.3.2	Y
				7.3.3	Y

4. 평가 결과 우수사례

평가요소	평가요소명	우수사례
2.1.2	교육과정 개발	- 대학의 교육과정이 산업체 요구수준 및 학위수준에 부합하도록 학과 운영계획서, 학기별 교육과정 운영 성과보고서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 및 지속적인 개선(PDCA)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또한,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강의평가, 만족도 조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음
5.1.1	학생자치활동 및 안전관리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 안정된 대학생활을 위해 학생 지원 및 안전관리 지원조직과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견을 수렴한 연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평가·개선체제(PDCA)가 구축되어 있음 - 대학발전전략에 따른 학생처 5개 분야 핵심전략(해외대학교류 확대/교원 교류, 지역교류 네트워크 구축, 학생회 및 동아리활동 지원 및 기타 업무)을 설정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5. 평가 결과 개선의견

평가요소	평가요소명	개선의견
1.2.1	대학의 조직 및 운영	- 산학협력단 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번호 개선이 필요함
6.1.5	교원 역량 개발	- 산업체 연수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대한 문서화 체계 개선이 필요함

Ⅲ 평가결과 활용 계획

-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평가에 활용
 -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를 대비하여 전체항목 파악
 - 기준별 평가결과 환류사항 체크

-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관리 자료로 활용
 - 교육목표, 대학발전계획, 외부평가 관련 평가지표 관리자료로 활용
 - 평가체제에 대한 주기적 검토, 개선사항 파악

- 대학 발전계획 수립 시 활용
 - 경영진의 정책결정 시 자체평가 자료를 활용 할 수 있음
 - 자체평가 결과로 우리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IV 자체평가 개선 실적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 실적

평가요소	평가요소명	개선실적
4.2.1	현장실습교육 지원	-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과 실습생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 2016학년도 만족도 조사(개선요구) 현장실습 사전교육 강화(현장실습 중요성, 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 2017학년도 사전교육 강화(반영사항) 취지 및 운영절차, 안전/예절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교육이수 1,114명) 현장실습 운영효과성 및 환류체계 강화
5.2.1	복지지원 (등록금대비 장학금 비율)	- 장학금 지급률 17%(2015회계 결산) → 17.5%(2016회계 결산) 으로 개선됨
5.2.2	소수집단 학생 지원	- 장애학생 간담회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을 수립